

광주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0가단53103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박구용, 이영정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2. 9. 6.

판 결 선 고 2022. 9.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B와 E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금융재산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7. 7. 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6,169,6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E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7. 8.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6,690,4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와 E 사이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7. 8.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37,951,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F 주식회사는 2009. 5.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E은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의 변제를 보증하였다.

2) F 주식회사는 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G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545호로 F 주식회사, H,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A 주식회사)에게 1,668,108,74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E은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문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최종적으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회사로, E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문 채권을 보유 중이다.

나. E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중 별소에서 제기된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고, 배우자인 B, 자녀들인 J, C, D, E, K이 공동상속인으로, E의 법정상속분은 2/13이다.

2) 공동상속인들은 2017. 7. 2.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B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J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이,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D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J 및 피고들은 2017. 8.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현황

1) 원고는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취지로 피고들을 상대로 201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8174호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8.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1심에서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약정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별지5 기재 예금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약정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며, 별지6,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약정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취소하고 그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면서 2020. 9. 8. 창원지방법원 2020나6090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30. 위 법원으로부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원고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제1심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위 2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전 소라 한다).

## 라. 이 사건 소송의 제기

원고는 전 소의 항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8. 20. 위 전 소의 제1심에서 판단 받지 못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 받고자 동일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sup>1)</sup>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 1) 원고

피고 C, D의 별지2, 3 목록 각 토지 중 일부가 국가로 수용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해짐에 따라,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 2) 피고들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7. 2004다54978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모두 원상회복청구권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고), 원고가 전소에서 주위적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판단 받지 못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 받고자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전소가 법원에 계속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정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김소연

[별지 1]

### L조합 예금

1. L조합 망 I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예금 30,246,859원
2. L조합 망 I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예금 9,136,461원
3. 위 이자금 621,779원
4. 위 합계 40,102,699원(=30,346,859원 + 9,136,461원 + 621,779원 - 수수료 2,400원) [갑 제8호증 L조합 회신서 참조] - 이상 피고 B 수령 -

[별지 2]

###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M 답 302㎡

[본래 경상남도 남해군 N 답 383㎡의 일부였으나 2019. 11. 29. 분할되어 경상남도 남해군 M으로 등록됨] - 이상 피고 C 소유 -

[별지 3]

###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O 답 1348㎡

[본래 경상남도 남해군 P 답 1628㎡의 일부였으나 2019. 11. 29. 분할되어 경상남도 남해군 O 답 1348㎡으로 등록됨]

- 이상 피고 D 소유 -

**별소에서 첨부한 별지 목록****[별지1]****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Q 대 294㎡
  2. 건물  
경상남도 남해군 Q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남해군 Q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R  
벽돌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7.84㎡  
부속건물  
벽돌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12.96㎡
  3.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S 답 863㎡
  4.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T 답 797㎡
- 이상 B 소유-

**[별지2]****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U 전 182㎡  
중 26분의 21지분
2.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V 대 30㎡
3.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W 대 97㎡
4. 건물  
경상남도 남해군 V외 1필지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남해군 V, W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X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75.00㎡

5.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Y 공장용지 370㎡
6. 건물  
경상남도 남해군 Y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남해군 Y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Z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일반공장(식품제조)  
72㎡
7.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AA 답 26㎡
8.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AB 전 488㎡
9.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AC 전 100㎡
10.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AD 임야 6942㎡

-이상 J 소유-

[별지3]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AE 전 430㎡
2.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AF 대 238㎡
3.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AG 전 107㎡
4.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AH 전 88㎡
5.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N 답 81㎡

-이상 C 소유-

[별지4]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P 답 280㎡

-이상 D 소유-

[별지 5]

 예금1.  망  의  계좌의 예금 30,246,859원2.  망  의  계좌의 예금 9,136,461원

3. 위 이자금 621,779원

4. 위 합계 30,346,859원 + 9,136,461원 + 621,779원 - 2,400(수수료)  
 =40,102,699원의 13분의 2지분[ 갑 5호증 -  회신서(예금) 참조]

-이상  수령-

[별지 6]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답 302㎡-이상  의 수용된 토지-

[별지 7]

## 부동산의 표시

## 1.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답 1348㎡-이상 의 수용된 토지-

[별지 8]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상금

## 1. 취득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 1

1)토지현황: 경남 남해군  (답, 1,348㎡)2)지급대상자:  ()

3)지급금액: 금이역사천육백육십팔만사천원정(246,684,000원)

4)지급계좌번호: 5)지급은행: 주식회사  ( 은행)

## 2. 취득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 2

1)토지현황: 경남 남해군  (답, 302㎡)2)지급대상자:  ()

3)지급금액: 금사천삼백사십팔만팔천원정(43,488,000원)

4)지급계좌번호: 5)지급은행:  은행-이상 ,  수령-

1) 전 소에서 첨부된 별지5, 6, 7은 이 사건에서 별지1, 2, 3으로 그대로 첨부되었다.